고문 자문 서비스 계약

이 자문 서비스 계약(이하 "계약")은 2020 년 9 월 29 일(이하 "체결일"이라 한다)에 000000000 주식회사(이하 "고객" 또는 회사")과 개인인 000(이하 "컨설턴트", 고객 및 컨설턴트를 함께 "당사자들"라 한다)에 의해 체결되었다.

1. 직함; 서비스

A. 직함

컨설턴트는 이 계약자 자격으로 "이사" 또는 "고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당사자들은 이 지위가 회사 내의 공식 이사지위가 아니라는 것에 합의하고 인정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고객의 임원,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 업무

컨설턴트는 계약기간 동안, 컨설턴트와 고객이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업무시간과 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자문서비스는 고객이 수시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컨설턴트의 지식 및 전문지식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컨설턴트는 고객이 요청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의성실 노력하여야 한다.

2. 자문기간

컨설턴트는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리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 한, 2020 년 10 월 10 일부터 2021 년 6 월 30 일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3. 의무와 책임

A. 업무 시간

컨설턴트는 수시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B. 법령 등의 준수

컨설턴트는 (i) 이 계약, (ii)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iii) 사전에 서면으로 컨설턴트에게 제공되는 모든 고객의 내부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C. 컨설턴트 직원

이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모든 인원은 컨설턴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으로 간주되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고객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컨설턴트는 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러한 인원의 조치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그들의 감독, 일상적 지휘 및 통제, 고용 혜택(있는 경우)의 제공 및 급여(모든 원천징수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D. 컨설턴트의 고용

컨설턴트가 제 3 자로부터 취업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계약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즉시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4. 보수, 혜택, 비용

A. 보수

컨설턴트는 다음의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합계 136,199,970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B. 비용, 장비

컨설턴트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노무, 기구 및 설비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C. 지불

i. 보수는 컨설턴트에게 계약기간 중 매월 20 일에 9 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ii. 제 3.d 항에 따라서, 컨설턴트는 제 4 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금액 또는 약정을 경감하는 다른 고용을 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그러한 다른 고용을 획득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비용 납부 의무를 경감시키는 결과를 주지 아니한다.

그 밖에 제 3 자로부터 취업을 얻을 때, 이 계약은 제 7 항에 따라 해지되며, 미지급한 모든 보수는 이 계약 해지 후 20 일 이내에 일시불로 컨설턴트에게 지급된다.

5. 당사자들의 관계

A. 독립적 계약자

컨설턴트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독립적 계약자의 자격으로 하며, 고객의 고용인, 임원, 이사 또는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하고 인정한다.

당사자들은 또한 제 1 항에 따라 컨설턴트에게 제공된 명칭에도 불구하고 컨설턴트는 제 3 자로부터의 고용을 구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회사의 이사로 스스로를 내세우지 아니할 것을 이해하고 합의한다.

B. 재직증명서

요청을 받는 경우, 고객은 컨설턴트에게 컨설턴트가 고객에게 고문 또는 이사의 자격으로 계약기간 (또는 본건 계약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동안 노동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한다.

C. 구속에 대한 권한

컨설턴트는 고객을 대리하거나 고객을 의무나 책임으로 구속할 권한이 없다.

D. 세금

컨설턴트는 고객으로부터 고용인의 이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받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따라 컨설턴트가 취득하는 보수와 관련된 모든 세금, 법정 기여금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세금 및 수수료의 지급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E. 윤리강령

컨설턴트는 항상 00000 윤리강령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00000 윤리강령은 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컨설턴트는 이 계약에 첨부된 별지 A 에 서명하고 이를 고객에게 줄 것임을 확인한다.

6. 비밀 정보의 비공개

A. 비밀 정보

제 6 항의 목적상, "비밀정보"란 이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컨설턴트에 의하여 취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과 그의 모회사, 자회사 및 그 밖의 회사의 계열회사 그리고 각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직원, 임원, 이사, 소유자, 주주 및 대리인(이하 "고객 그룹")과 그들의 사업, 현재 및 장래의 고객, 공급자, 투자자, 그 밖의 관련 제 3 자의 유형 및 무형의 형태의 모든 비밀, 기밀 및 소유문서, 자료 및 그 밖의 정보를 의미한다.

B. 기밀유지 의무

컨설턴트는 이 비밀정보와 고객의 고객 집단의 배타적인 지식 및 이용을 위해 비밀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들이 고객에게 경쟁적인 중요성과 상업적 가치가 높고, 비밀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공개가 재정적 비용 발생, 영업상 이익의 손실, 제 3 자와의 기밀계약상 책임, 민사 손해 및 형사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컨설턴트는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서약한다.

i. 모든 비밀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취급하는 것.

ii. 고객 그룹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 및 권한 없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컨설턴트의 잔여 고용 임무 수행 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 그룹의 직접적인 고용원 이외의 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밀정보를 공개, 발표, 전달 또는 제공하거나 공개, 공표, 전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iii. 이 계약에 따라 컨설턴트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비밀정보도 접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가 포함된 문서, 기록, 파일, 미디어 또는 그 밖의 자료를 복사하지 아니하며, 고객 그룹의 공관이나 통제소로부터 그러한 문서, 기록, 파일, 미디어 또는 그 밖의 자료를 제거하지 아니한다.

C. 기간

컨설턴트는 비밀정보에 대한 계약상의 컨설턴트의 의무가 즉시 시작되고, 이 계약의 위반 또는 컨설턴트나 컨설턴트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위반의 결과로서 외에는 비밀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까지 계약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D. 예외사항

이 계약의 어느 조항도 적용 가능한 법이나 규정 또는 권한 있는 법원 또는 권한 있는 정부기관의 유효한 명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밀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가 그러한 법, 규정 또는 명령이 요구하는 공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컨설턴트는 고객 그룹의 권한 있는 관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계약 해지

이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될 수 있다.

a. 상호 합의에 의한 경우

b. 다음의 경우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i. 권한 있는 정부당국의 금지명령, 제한명령 또는 법령이 그 당사자의 과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에 따라 계획된 거래의 완료를 금지하는 것을 발한다. 또는

ii. 일방 당사자가 이 계약에 따른 진술 및 보증, 서약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러한 위반을 시정할 수 없거나, 또는 시정할 수 있으나 위반 당사자에게 그러한 위반의 서면 통보를 한 후 3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없는 경우.

c. 컨설턴트가 취업을 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8. 위반, 구제조치

A. 구제; 벌금;

제 7 절에 명시된 고객의 해지 권리를 제한함이 없이, 컨설턴트가 자신의 의무, 이 계약상 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고객 과 컨설턴트 간 2020 년 9 월 29 일 체결된 종료계약서 상의 조건들을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위반사항이 3 영업일 내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컨설턴트는 위임자의

행동 또는 절차를 통한 추가적인 조치 없이, 그리고 모든 법률 또는 이 계약의 다른 규정에 따른 그 밖의 권리 또는 구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컨설턴트가 컨설턴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이하 "벌금"이라 한다)와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B. 특정 이행

고객은 법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는 것 외에도 손해의 회복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이 계약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벌금 외에도 이 계약에 따른 그 권리의 특정 이행을 요구할 자격이 있으며, 컨설턴트는 법률상 구제조치가 적절한 특정 이행에 대한 어떠한 방어를 포기하고 주장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9. 일반규정

A. 준거법

이 계약과 이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는 법 규정의 충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국 법에 따라 지배되고 해석된다.

B. 분쟁

컨설턴트의 고용, 고용 종료,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위반 주장에 관련된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유효한 중재 규칙에 따라 3 명의 중재인과의 중재로만 해결한다.

중재의 장소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중재언어는 영어로 한다.

중재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의 판결은 분쟁의 대상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

중재는 당사자들 간의 모든 분쟁에 대한 단독적이고 배타적인 최종 구제가 된다.

C. 양도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이나 이 계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 이익 또는 의무도 양도할 수 없다.

이 계약은 당사자들 및 그 상속인과 허가된 양도자를 구속하며 그 이익을 위하여 효력을 가진다.

D. 제 3 의 수익자

이 계약은 양 당사자(그 각각의 상속인, 집행자, 관리인, 승계인 및 허가된 양수인)의 단독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이 계약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떠한 규정도 이 계약에 따라 또는 이 계약에 따라 어떠한 성질의 법적 또는 공평한 권리, 이익 또는 구제를 다른 어떠한 인에게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E. 면제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계약 규정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것은 그러한 규정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동일한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는 것은 더 이상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조치의 행사 또는 그 밖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조치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F. 가분성

이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권한 있는 법원 또는 중재 당국에 의하여 어떠한 점에서든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러한 결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집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러한 판정은 이 계약의 나머지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당사자들을 계속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또한 그러한 법원 [또는 중재 당국]이 위반 규정에 대한 재작성, 삭제 또는 추가를 통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이 계약에 구현된 당사자들의 의도와 합의를 반영하여 이 계약의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한 모든 수정은 이 계약의 일부가 되고 원래에 규정된 것처럼 취급된다.

만약 그러한 조항 또는 규정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은 그러한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조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사자들은 법원 또는 중재당국에 의하여 그렇게 개정된 이 계약이 각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집행 가능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합의한다.

G. 부본

이 계약은 수 개의 부본에 체결될 수 있으며, 그 모두는 하나의 동일한 증서를 구성한다.

상대방은 팩스, 전자우편(PDF 또는 전자서명이나 그 밖의 전송방식을 포함하며)을 통하여 상대방을 인도할 수 있으며 그렇게 교부된 부본은 정당하고 유효하게 교부된 것으로 본다

H. 언어

이 계약은 영어와 한국어 모두로 작성되었다; 다만, 영어본과 한국어본 사이에 어떠한 충돌이 있는 경우, 해당 충돌의 범위내에서 영어본이 우선한다.

[서명쪽]

당사자들은 위에 기재된 날짜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객

BUREAU VERITAS KOREA CO., LTD.

서명: _____
성명:
직함:

서명: _____
성명:
직함:

서명: _____
성명:
직함:

KangNam
Labor Law Firm
Room #1501, A-1501 406, Teheran-ro, Gangnam-gu, Seoul, 06192, Republic of Korea
Tel: +82-(0)2-501-2949
Fax: +82-(0)2-538-8542
www.k-labor.com

컨설턴트

손미정

서명: _____

성명:

생년월일:

별지 A

컨설턴트의 00000 규정 준수 프로그램 승낙 선언

00000 귀중

우리가 00000 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에게 윤리강령이 제공되었음을 증명한다.

우리는 뇌물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받았거나 이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우리는 또한 다음 사항을 윤리강령으로 신중히 읽고 이해한 후에 수락할 것임을 확인한다.

- 00000 윤리강령의 원칙 및 규칙 완전히 준수하고, 00000 과 체결할 수 있는 모든 계약은 00000 윤리강령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이러한 준수는 00000 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00000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00000 에게 선언의 내용을 제 3 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다.

날짜

서명

성함